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449호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11일, 유영호 의원 등 39명
상정일자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시작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 배상청구소송」이 2018년 2월 원고일부승소 항소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 1심 및 항고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개입’, ‘위법적인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로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을 침해한 것’ 등에 대한 판결을 반영한 조속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요구함으로써, 고령의 미군위안부의 명예 회복과 보상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3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11일, 유영호 의원 등 39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3월 1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 3월 24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유영호 의원)

가. 결의이유

-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명예 회복과 합리적 보상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함. 나아가 국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함.
-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미군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구제 절차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주요내용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미군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었음.
- 2014년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은 한국 정부에 대해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 1심¹⁾ 및 항소심²⁾판결에서 사법부는 상당 부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018년 항소심의 판결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며 미군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원공식)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붙임2]

10. 받는 기관

○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여성
가족위원회), 대법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기도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의안번호 제2449호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은 2022. 3. 11. 유영호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 3. 14.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미군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었음.
-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 및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유엔군 출입 지정接客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 지역으로의 집결문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군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지촌 지정 및 조성에 개입하였음.

- 또한 한국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성병 관리를 위해 「舊전염병예방법」(1954.2.2.)을 제정하고 정기검진을 요구하였으며, 성병에 감염된 경우 위법적으로 낙검자수용소에 격리수감하여 강제적 치료를 강행하며 미군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한 바 있음.
- 이에 2014년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122명은 한국 정부에 대해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 1심¹⁾ 및 2심²⁾판결에서 사법부는 상당 부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018년 2심의 선고 판결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중 10명이 유명을 달리하였음.
-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제기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며 미군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II. 검토의견

1.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의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 판결과 나아가 국회의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³⁾을 촉구하는 것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2. 미군위안부 관련 소송 및 국회 법제정 주요내용 및 현황

가.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현황

- 2014년 기지촌 원고(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122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①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 ②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방치 ③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④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 를 주장하며 1인당 1,000만 원의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
- 1심 판결에서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⁴⁾」(시행 1977.8.) 이전 조직·폭력적인 성병 감염인에 대한 낙점자수용소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위법함이 인정되어 122명의 원고 중 해당 피해자 57명에게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음.
-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을 ‘위안부’ 로 명확히 하고, (법 제정 이전)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 행위임을 인정하였으며, 공소시효(손해배상 채권 시효 5년)의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現 국가)에게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① 외국군의 사진 진작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국가가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였고, ② 애국교육을 시행하거나, 위안부등록제를 실시한 행위 등을 근거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다고 판정하였으며,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77. 8. 19.] [보건사회부령 제570호, 1977. 8. 19., 제정] 제16조(제3종 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환자 중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2. 부랑·걸식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전염병 예방상 격리 수용하여 치료함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③ 1심에서 인정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시행 1977. 8.) 시행 이전의 위법함 뿐 아니라, 법 제정 이후에도 의사 진단 없이 미군의 컨택⁵⁾ 및 토벌⁶⁾로 낙검자수용소에 격리 수감하여 강제적 성병 치료를 조치한 것은 위법하며,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행위는 당시 미군위안부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등한시한 국가의 잘못임을 확실히 하였음.

미군위안부 성병 검사의 법적 근거 / 국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로 명명한 증거
<p>「전염병예방법시행령」</p> <p>[시행 1957. 2. 28.] [대통령령 제1257호, 1957. 2. 28., 제정]</p> <p>제4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接客부, 기타接客을 업으로 하는 부녀(接待婦, 酌婦等) 2주1회 2. 댄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일주이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또한 ④ 기지촌 유입 경로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기화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성(性), 나아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2018년 2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및 항소인에게 각 300만 원 ~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5)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여성을 지목하는 것

6) 미군·경찰·보건소의 합동단속

- 항소심 판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이로 인한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 2022년 3월 현재 4년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계류 중.

나. 국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 현황

- 국회의 미군위안부 법률 제정안은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2020년 12월 회부 이후 2021년 2월 상정되었으며 2022년 3월 현재 계류 중에 있음.

3. 타당성 검토

가. 결의안 내용의 당위성

- 본 촉구 결의안의 인식론적 토대인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구성원의 책무’ 에 대한 당위성의 맥락에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중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본 결의안의 이해도를 제고 하고자 함.
- (1) 기지촌 여성은 ‘위안부’ 인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위안부(慰安婦)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

된 여자’ 이기에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유입된 성매매 여성’ 을 과연 ‘위안부’ 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1심 재판에서 피고(국가)는 ‘미군위안부’ 가 아닌 ‘기지촌 여성’ 으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기지촌 여성의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의 근거로 제시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시 국가가 ‘기지촌 여성’ 을 ‘위안부로 인식’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재판부 또한 ‘위안부’ 로 판시하고 있음.

국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中

- 정부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긴 했으나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중략)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 교수는 “1980년대까지 ‘위안부’ 라는 용어는 ‘일본군위안부’ 가 아니라 ‘미군위안부’ 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1951년 ~ 1989년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검색한 720건 중 91.5%(659건)가 ‘미군위안부’를 의미했으며, 지금 와서 이들이 ‘위안부’ 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과거 40년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 이라고 지적함.⁷⁾

○ (2) 미군위안부의 자발적인 기지촌 유입

- 일본군위안부가 강제 징용된 ‘민족의 희생자’ 로 인식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군위안부의 경우 인신매매 외 ‘자발적 선택’ 으로 기지촌에 유입된 경우가 있어 ‘양색시, 양공주’ 등으로 불리며 혐오의 대상으로 폄하됨.

7) 출처: NEWSIS (2022. 2. 4.) 무심코 따라 나선 길…"난 미군위안부였습니다"

-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불응하거나 자율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도록 억류 및 감금되어 성적으로 착취되었다면 그 위법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 미군위안부에 대한 우리 사회 및 사회구성원 인식과 별개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본권과 존엄성을 갖고 있는 권리적 존재로서 응당 자신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항소심 최종변론(2017. 12. 21.) 박영자 원고 법정 진술 中 발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가 허가해준 직업소개소를 찾았고 그 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지촌으로 팔려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팔려 가고 싶어 기지촌으로 팔려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숙함을 빌미로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중략)

임신을 하면 낙태를 시켰고 그 비용은 빚으로 올리고(중략), **도망나오면 포주한테 잡혀 폭력을 받고 빚을 더 올려 다른 집으로 보내졌습니다.**(중략)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한 파출소는 다시 우리를 포주에게 도로 돌려 보냈습니다.**(중략)

○ (3) 구조적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 인신매매, 미성년 성매매와 성폭력, 강제노동, 모독, 비하, 멸시, 배제, 감금, 폭력,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로 점철된 미군위안부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공모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매매 제도의 부끄러운 역사적 실재를 고스란히 체현하고 있음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선행될 때,⁸⁾
- 비로소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문제가 우매한 개인의 선택에서 야기된 불운이 아니라 당시 국정운영 전략에서 기인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는 명징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

8)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 심포지엄 자료집-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발표문

○ (4) 초국적차원에서 성매매 금지

-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 그 자체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민족·인종과 같은 파벌적 문제가 아닌 초국적차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성 착취 폭력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함.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일 1950. 3. 21 / 발효일 1951. 7. 25 / 당사국 수 73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5. 14 • (주요내용)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본 협약의 체결국은 또한 하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한 자 제20조 본 협약의 체결국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 중인 자, 특히 부녀자들이 매춘행위를 할 위험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를 감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994년 이후, 한국정부가 발급해 주는 E-6비자(예술홍행사증)를 통해 기지촌으로 유입된 필리핀인, 러시아인이 한국 여성을 대신해 미군 대상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⁹⁾
- 2010년 미국 국무부는 미군 기지의 부근에서 가혹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두고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 중 하나라고 보고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여성들이 주한미군 기지 가까이 있는 주스바에서 일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필리핀 여성의 기지촌 유입은 지속되고 있음.¹⁰⁾
- 미군위안부와 같은 인권유린의 과거사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다시 재현(再現)되지 않도록, 저개발 국가의 피난민·영세민·성매매

9) 출처: 대한민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21. 8. 10.)한국 역사 속 감춰진 그늘, 기지촌을 아시나요?

10) 출처: 대한민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21. 8. 10.)한국 역사 속 감춰진 그늘, 기지촌을 아시나요?

여성·군노무자·군납업자·상인 등이 모여들어 새롭게 형성된 오늘날의 기지촌에서 주둔군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특수 유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될 것임.¹¹⁾

나. 결의안 내용 및 촉구 행위의 타당성

-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및 관리·운영에 개입하였고, 위법적인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로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 본 결의안은 이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촉구하는 것이기에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한편,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이기에,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반영하여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음.
- 현재(2022. 3.) 최종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4년째 계류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상위법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등 조례의 실효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에 본 소송에 대해 원고(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검토 의견

- 본 결의안은 1심 및 항고심의 판결을 반영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촉구함으로써 국가폭력의 희생자로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11) 출처: 대한민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2021. 8. 10.)한국 역사 속 감춰진 그늘, 기지촌을 아시나요?

견인하고, 고령자인 원고(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며 시의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 됨.

* 참고 : 1심 원고 122명, 2심 원고 117명(재판 과정 중 5명 사망)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유린의 피해 생존자들이 1심 및 2심재판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이끌어 낸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통한 국가안보와 외화벌이의 목적을 위해 기지촌 미군위안부를 국가성장의 주요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1957년 <제4차 성병방지대책위원회> 회의의 ‘성매매 여성 집결’ 결정의 일환으로 미군기지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보건사회부 산하 성병진료소 89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개소를 설치하면서 기지촌 내 성매매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협조하였다.

1960년대 이르러서는 「舊윤락행위등방지법」(1961.11.9.)으로 이미 성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적으로 국내 총 104개소(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등 32개 기지촌 포함)에 있는 특정 윤락 지역을 ‘윤락행위의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적선지구로 지정’ 하였다.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지촌을 ‘정부 주도 외화벌이 사업’ 이라고 칭송하며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 이라는 정신교육을 시행하였고,

1970년대에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기지촌에 가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격려하였으며, 1971년 제3공화국은 정부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촌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외화벌이의 도구이자 안보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명징한 인권유린의 사실 등을 바탕으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2년 7개월 만에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인정하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주한 미군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촌 조성·관리를 주도하였으며, 미국군의 성병 예방을 위해 미군위안부의 성병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병증이 확인된 경우 위법적으로 낙점자 수용소에 격리 수감하여 강제적 치료를 강행하는 등 미군의 성노예로 내몰았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2심 판결에서 당시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적시하였다.

이렇듯 1심과 2심의 재판부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 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2018년 서울고등 법원 2심 선고 판결 이후 4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 또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미동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대법원과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현재의 담보상태에 대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 및 2심의 결과에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헌법이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동종 사건에 대한 판례의 준거로서 효력이 발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에도 강력한 탄력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5.19.)를 제정하고 정부에게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행보는 도민의 바람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는 지방정부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인권유린의 과거사에 대한 범사회적인 반성 및 성찰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책무에 관한 시민적 숙의 및 합의의 장을 견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계류 중인 대법원의 재판 지연과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2. 3. 31.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